◈◈ 목 차 ◈◈

♦ 보험약관

•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베스트업변액연금보험 약관 (
•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57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65
시ᅰ브의이 서며드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 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 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상품은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이 0%로 산출 된 경우에는 0%로 산출된 날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 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연금개시시점까지 공시이 율로 부리(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하여 드리며, 일 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로부터 특별계정(펀드) 운용실적 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이 상품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펀드플랫폼내 펀드적 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이 상품의 펀드자동배분은 최소 월 1회 이상(단, 특별 계정적립금이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함.) 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금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됩니다.
-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적용되는 계약별 할인이율은 계약시점의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일반계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적용되는 승수는 성장자산펀드 편입금액 계산을 위한 배수(범 위:1.0~4.0)로 계약 체결시점 계약자에게 별도 공지하 여드립니다. 계약체결이후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게 서 면(계약자 동의시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 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운용되고, 중도 해지시에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 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변액보험】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 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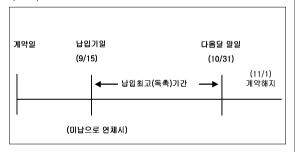
5. 계약취소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 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로 합니다.

(예시)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 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베스트업변액연금보험Ⅱ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베스트업변액연금보험약관

제1관 모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1	12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1	12
제 2조 【청약의 철회】	12
제 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13
제 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1	14
제 5조 【용어의 정의】	14
제 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17
제 7조 【계약의 무효】	18
제 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18
제 9조 【계약지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0조 [계약의 소멸] 2	20
제11조【보험나이】 2	20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2	21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2	21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	
제14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2	22
제14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2 제1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	23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	23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	24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2	25
제1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	25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26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26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	26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	27
제23조【해지환급금】 2	27
제24조【배당금의 지급】 2	28
제25조 【소멸시효】 2	28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	28
제26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2	
제27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2	-u 20
제28조 [펀드의 유형] 2	-u 20

제2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제30조 【펀드자동재배분】(제31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30
제31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31
제32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33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32
제34조【특별계정의 폐지】 (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33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33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8조【사기에 의한 계약】 (
100—1111	
제6과 보험금 지급 등의 적차	35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39조 [주소변경 통지] ····· (35
제40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3E
제41조 [대표자의 지정] ···································	
제4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0 20
제4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36 30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4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0 20
제46조 [계약내용의 교환]	20 20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20
제48조【보험계약대출】	39
계기 보게 되지 도	•^
제7관 분쟁조정 등 4	łU
제49조【분쟁의 조정】	
제50조【관할법원】	
제51조【약관의 해석】	
제5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41
제53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41
제54조【결산사항의 통지】	41
제5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1
제5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	42
제57조【준거법】	
제5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2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베스트업변액연금보험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의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 정연금은 최종연금지급일 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일반사망보험금", "재해 사망보험금"을 합하여 "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계약을 체결시 아래표와 같이 정해지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부	개인계약(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 보증) 부부계약(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보증금액부		
	보증기간부	

- ④ 이 보험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로 구성됩니다.
 -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 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만 7년

전까지 기본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일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 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

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 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 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의한 바와 같습니다.
 - 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8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이하"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설명】

-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 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나.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 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일반계정전환적립금으로 이 계약

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 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8호,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니다.
-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8.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시점에 특별계정 운용실적 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개시 전까지 경과확정보증금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 연금적립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하여 보증됩니다.
- 9. "경과확정보증금"이라 함은 1차월도에는 계약일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이하 "보증비율"이라 합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2차월도 이후에는 "이미납입한 보험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매월 계약해당일(매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의 "계약자적립금"과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
연금개시전	12년 ~ 20년	100%
보험기간	21년 이상	110%

10.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하며,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 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 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 운용보수 : 특별계정자산 운용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 수탁보수 : 특별계정자산 보관 및 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제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는 이를 차감한 금

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 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수금방법
 -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연금개시나이의 단축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 4. 계약자
 -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에는 종신연급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7항, 제5조(용어의 정의) 제6호 내지 제8호,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직후의이미 납입한 보험료 가앤2

- = 감액직전 이미납입한보험료 × 감액직후계약자적립금 감액직전계약자적립금
-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제47조(계약 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른 기인출 및 기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47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한 경우 제5조(용어의 정의) 제9호의 직 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 감액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mark>감액직후계약자적립금</mark> 감액직전계약자적립금
- (주) "감액 직전 경과확정보증금"은 해당 감액 전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른 기인출 및 기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참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0%~ 50% 까지5% 단위)을 연금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⑧ 제1항 제3호의 연금개시나이의 단축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직전월도 계약해당일(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 이후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 없이 보험료의 납입이완료된 후 연금개시까지 최소 7년간의 거치기간이 경과된 계약으로계약자적립금이 제5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서 정한 직전월도 계약해

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연금 개시일은 「신청일 + 제3영업일」로 하며 변경된 연금 개시일 기준 계약자적립금이 제5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서 정한 "이 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연금개시 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⑨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7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 료된 경우

제11조【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만 7년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4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 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편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니다.
 -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월계약해당일 제3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로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월계약해당일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각각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6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로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로부터 각각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

업일 | 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3.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 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 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 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이 보험의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운용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제4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39조(주소변경 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 하여 관리합니다.
- ②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해지된 날부터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 및 제38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재해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 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0조(계약의 소멸) 및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생존연금은 연금개시 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보 다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 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 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치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 및 연금개시후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 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 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일까지 연복리 2.5%, 연금개시후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부리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3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③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지 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한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또는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4항에 관한 사항에 의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해지신청일에 지급합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 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6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계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적립이율(공시이율,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 다)로 부리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7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본점에 비치합니다.
-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 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채권형 :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의 국·공채 및 특수채,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포함)을 포함] 및 채권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10년 04월

30일)"으로 합니다.

- 2. 코리아인덱스형 : 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수 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 변액연금보험의 "코리아인덱스형(설정일 2010년 04월 30일)"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 3개월 이내,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아래의 펀드플랫폼으로 적용되며, 최초계약시 선택한 펀드플랫폼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적용됩니다.

펀드플랫폼	안전자산펀드	성장자산펀드
코리아인덱스 플랫폼	채권형	코리아인덱스형

- ②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1항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최초 계약시 선택한 펀드플랫폼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됩니다.
- ③ 이 계약에서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 의 편입비율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① 회사는 계약자가 최초 계약시 선택한 펀드플랫폼내의 펀드 중 아래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펀드별 편입비율을 산출하여 각 펀드별 해당 적립금을 안전자

산펀드와 성장자산펀드에 자동 편입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펀드별 편입 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 상(다만, 특별계정적립금이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함) 변경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금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펀드별 편입비 육은 최초 계약시 별도로 공지하여드립니다.

펀드별 펀입비율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Min.(기준성장자산적립금x승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x80%)] /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	
안전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100% -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주) ■ 기준성장자산적립금

- : Max.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 (기준경과확정보증금 × 평가비율 × 1.02), 0]
- · 기준경과확정보증금 : 경과확정보증금 X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
- · 평가비율 : 1 / (1 + 할인이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경과기간)
- · 할인이율 : 평가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로써 계약별 할인이율은 계약시점의 이 보험의 여금개시전 일반계정 공사이율의 최저보중이율로 한.
- · 경과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경과일수
- 승수 : 성장자산펀드 편입금액 계산을 위한 배수(범위:1.0~4.0)로 계약 체결시점 계약자에게 별도 공지함. 다만, 계약체결이후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 동의시 전자우편)으로 안내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매일평가하여 산출된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이 0%로 산출된 경우에는 0%로 산출된 날(이하 '기준안전자산도달일'로 한다)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운용하며, 이 때의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로부터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전환적립금'이라 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로부터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제10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1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32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합니다.

좌당기준가격 = <u>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u>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 니다.

제33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 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 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 합니다.

제34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함 수 있습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9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5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진단계약의 경우에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 나만, 모염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아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3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9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41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4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지급시)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4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으로 년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당시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일반계정 전환이전의 경우에는 「신청일 + 제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항의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직전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 이출직전계약자적립금
-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기인출 및 기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 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 확정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 인출직전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직전계약자적립금
- (주)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은 해당 인출 전에 기인출 및 기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인출시청일에 지급한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까지 인출가능

제4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

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다만,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상환일로부터「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경우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이후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5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3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 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 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 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4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일반사망보험금(약관 제19조 제1호)

지급 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기본보험료의 10배	
금액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9조 제2호)

지급 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기본보험료의 20배		
금액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한니다.

3. 생존연금(약관 제19조 제3호)

1)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가) 개인계약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 금액	10년/ 20년/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100세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보증 사한 금액을 지급

나)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 금액	10년/ 20년/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100세 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 보증 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사유	10년/ 20년/ 100세 보증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10년/ 20년/ 100세 보증 지급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사유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주)

-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 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때 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 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작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 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 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20년 및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0년, 20년 및 100세 까지의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5. 위의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연금의 보증지 급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6.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설계자금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시
사유	(다만, 1회에 한함)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금액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노후설계자금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 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신청일'로 합니다.

2.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가) 개인계약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 금액	10년/ 20년/ 100세 보증 지급

나)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사유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 금액	10년/ 20년/ 100세 보증 지급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10년/ 20년/ 100세 보증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10년/ 20년/ 100세 보증 지급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3.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사유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 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주)

-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 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때 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 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 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20년 및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0년, 20년 및 100세 까지의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5. 위의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6.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7.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4.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확정 지급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 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5. 상속연금형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
사유	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 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 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주)

-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 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

를 말합니다.

-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 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20년 및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0년, 20년 및 100세 까지의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5. 확정연금형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드립니다.
-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연금 의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 연금지급기 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 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 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 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44조 제2항 관련)

■ 사망보험금(약관 제19조 제1호 및 제2호)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생존연금(약관 제19조 제3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부리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 지의 기간				
지급이자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약관 제23조)

- 계약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은 경우(약관 제23조 1항)				
부리기간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부리기간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 기간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オノユハスレ	에저이유 + 1%			

부리기간	해시완급함 정주일의 다음글구터 시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예정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약관 제23조 5항)

부리기간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3영업일」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예정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상기 예정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의 예정 이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2.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생존연금 (제19조 제3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59
제 2조【계약자의 범위】	59
제 3조【세금우대 요건】	59
제 4조【세금우대등록】 ·····	59
제 5조【가입한도】	59
제 6조【가입한도 산정방법】	60
제 7조【한도변경】	60
제 8조【세금우대처리】	60
제 9조【특별중도 해지】	60
제10조【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정보제공】	60
제11조【준용규정】	61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세금우대종 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자의 범위】

계약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만 20세 이상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니다. 다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을 받지아니합니다.

제3조【세금우대 요건】

- 이 특약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① 보험가입시점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 "계약유지 기간"이라 합니다)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조【세금우대등록】

제3조에 의해 계약자가 주계약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 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으로 등록하여 드립니 다.

제5조【가입한도】

-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을 포함하여 1인당 1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등은 1인당 가입하도 계상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금액은 이 보험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가입한도 산정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도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일시납계약의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 2. 연납 및 분할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총 납입할 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 3.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7조【한도변경】

계약자가 이 특약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한도 변 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세금우대처리】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제9조【특별중도 해지】

-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 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합니 다.
 - 1. 보험계약자의 사망·해외이주
 -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계약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계약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별 세금우대종 합저축 자료(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세금우대저축계약의 체 결·해지·권리이전 및 계약내용의 변경사항)를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합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가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조세특례제 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	관	보험	계약	의 성	성립과	유지	•••	•••••	•••••	•••••	•••••	65
제	1조	[조	용대	상】								65
제	2조	[=	약의	체결	및 4	└멸 】			•••••		•••••	65
제2	관	지정	대리	청구	인의	지정	•••••	•••••	•••••	•••••		65
제	3조	<u> </u>	정대	리청-	구인의	지정)	١.					65
제	4조	<u> </u>	정대	리청-	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시	구비	서류】		66
제3	관 .	보험	금기	답	등의	절차	••••		•••••	•••••		66
제	5조	[보	험금	지급	· 등의	절차)						66
제4	관 :	기티	사항	•					•••••			67
제	7조	【준	용규	정】								67
		_		_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 대상)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시 구비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

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